

## 일반논문

# 역외 소득 유출의 형태 및 방향과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

The main factors deciding the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in Korea  
and the reliability of GRNI estimates

박 경\*\*

2009년 이후 통계청에서 지역 분배소득을 공표한 이후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문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역별로 역외소득 유출의 규모만 산정할 뿐, 통근으로 인한 피용자 보수나 기업소득의 이전에서 나타나는 영업 잉여의 유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 또 역외 소득 유출의 이전 지역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역외 소득 유출의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 DB와 2010년 경제총조사의 영업 잉여 자료 및 총사업체조사의 본사, 공장·지사·영업소의 지역별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유출지역과 방향을 분석한다.

한편 지역 분배소득을 공표하는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분배 GRNI를 추정할 때, 생산측면에서 파악한 영업 잉여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 소득 통계는 법인의 소재지 기준과 등록지 기준의 영업 잉여 차이까지 파악,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 통계인지 의문이 있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분배소득 통계가 과연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계인가도 검토한다.

주요어: 지역 분배소득, 소득의 역외유출, 거주자 기준 및 소재지 기준, 영업 잉여, 피용자 보수

\* 이 논문은 2011년 목원대학교 연구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baiuro@mok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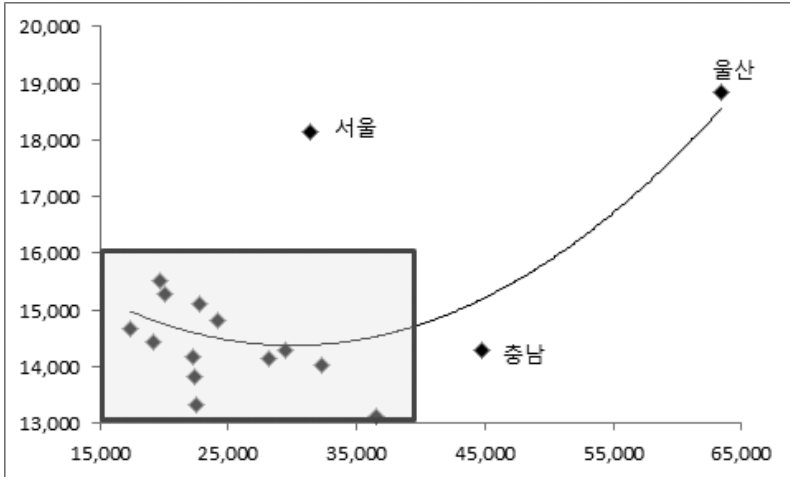
## 1. 서론

지역 간 소득격차의 문제는 지역경제학의 핵심적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노근호 외, 1995; 이진원, 1997; 구재운 외, 1999; 유병철 외, 2004; 민경휘, 2005; 박성익 외, 2005; 허문구 외, 2008; 김종일, 2010; 최두열 외, 2014 등). 대부분의 연구는 생산측면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이용한 총량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내총생산이 지역 밀착형의 지표로서 지역의 경제활동 총량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최두열 외, 2014: 159).

그러나 국민 총생산의 경우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추계한 소득이 결과적으로 같아지지만, 지역 소득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경우와 달리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달리 지역 간 소득의 유출입이 발생하며, 이 결과 생산 소득과 분배 소득 간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측면에서 추계한 1인당 GRDP와 1인당 분배소득(개인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1인당 생산소득이 상위그룹에 속하는 전남, 경북 등의 경우 1인당 분배소득(개인소득)은 전국의 하위 지역에 속하며(전남, 3위→16위, 경북, 4위→13위), 1인당 생산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 지역은 1인당 분배소득(개인소득)으로 볼 때 전국의 상위 지역으로 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부산, 14위→3위, 대구, 16위→7위, 대전, 13위→4위, 2013년 기준). 허문구 외(2015)는 우리나라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의 이런 모순적인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에는 U자형 관계를 보이지만, 양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울산, 충남,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과 분배소득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그림 1>의 그림자 부분). 즉,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생산소득이 증가할수록 분배소득 수준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앞의 글, 2015: 2~3).

<그림 1> 지역별 1인당 생산소득과 분배소득(개인소득) 간의 관계(2012년)

(단위: 천 원)



자료: 지역 소득통계 DB(허문구·이상호·김낙현, 2015: 3의 <그림 1-3> 재인용).

이것은 생산된 지역 내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인데, 2009년 이후 통계청에서 지역 분배소득을 공표한 이후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박경, 2011; 정준호 외, 201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3; 허문구 외, 2015).<sup>1)</sup> 박경(2011)은 처음으로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의 차인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을 가지고 역외소득유출의 규모를 추정하여,<sup>2)</sup> 지역 주민의 소득 체감도 하락이 역외 소득유출 때문이며, 그 이유가 생산측면의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밝혔다. 또 역외 소득 유출이 높

- 1) 2009년 이전에도 역외 소득유출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분배소득에 관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가계소비액, 예금액, 지방세수 등의 대리지표(김정완, 2004), 혹은 자금 유출입 통계(한국은행 강원본부, 2007)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 2) 2009년부터 통계청에서 분배 지역 소득을 발표하면서 1인당 생산 GRDP와 분배 GRNI 간에 상당한 괴리 현상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를 소득의 역외 유출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은 지역일수록 분공장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하여 분공장 체제의 경제구조하에서 영업 잉여의 역외 유출,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소득의 역외 유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호 외(2012)도 같은 맥락에서 서울로의 법인 영업 잉여와 재산소득 집중이 주요 요인이라 보고 서울의 타 지역에 대한 경제권력의 행사가 우리나라 공간불균형의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역 별로 역외소득 유출의 규모를 산정하고 생산 및 분배 소득의 격차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 외로의 통근이나, 법인의 영업 잉여 유출 때문에 역외 소득 유출이 일어난다고 분석할 뿐, 통근으로 인한 피용자 보수와 기업소득의 이전에서 나타나는 영업 잉여의 유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 또 역외 소득 유출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유출되는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지역 소득 통계에는 분배 측면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크기만 있을 뿐 생산측면에서 추계한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소득 통계만으로는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벡터를 따로 추정할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허문구 외(2015)의 연구는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 중 지역 소득 유출에 어떤 요소가 더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 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의 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각각이 역외 순수취본원소득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으로 검토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들은 피용자 보수가 영업 잉여보다 역외 소득 유출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특히 도 지역에서는 본사 비중이 높고 영업 잉여의 유입이 클수록 지역 소득 유출이 작아진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은 소득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통근인구의 지역 내 거주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앞의 글, 2015: 30).

만약 허문구 외(2015)처럼 피용자 보수가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 그것은 역외로의 통근자가 있는 한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즉, 생산소득은 근무지 기준(workplace base)으로, 분배소득은 거주지 기준(residence-base)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양자를 추계하여 발표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Trevor & Bethan, 2013). 지역 분배소득을 발표하는 다른 나라(영국, 일본, 미국, 호주 등)도 이런 차이로부터 지역 간 소득 유출 문제를 인식하여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그런 나라는 별로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집중이 큰 영국이나 일본도 지역생산소득과 분배소득 양자를 추계하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 간 소득 유출 문제를 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sup>3)</sup>

그러므로 우선 역외 소득 유출 가운데,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 두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큰 요인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허문구 외(2015)는 지역 간 소득 유출의 시계열 패널 분석을 통해 이 상대적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통계청에서 분배소득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측면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크기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국세청의 법인소득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배 측면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생산측면에서 추계한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통계를 입수하여 이를 분배 측면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와 비교함으로써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각각의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유사한 영국이나 일본도 지역 분배소득을 추계, 발표하지만 이 자료를 가지

3) 일본의 경우 통근자에 의한 역외 소득 유출은 오히려 수도권인 관동이나 동경이 순유출을 보이고 지방은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어, 통근에 의한 소득의 순유출은 소득의 수도권 집중의 완화 요인이 되고 있다[內閣府, 『縣民經濟計算』(2010) 및 박경, 2011: 17].

고 지역 간 소득 유출 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은 통근자에 따른 거주지 기준과 근무지 기준의 소득 차이만 분배소득에 반영하고, 법인의 소재지와 등록지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영업 잉여의 차이를 분배소득의 추계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 소득 통계는 법인의 소재지 기준과 등록지 기준의 영업 잉여 차이까지 파악,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진전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지역 소득 통계에 반영하여 추계하지 않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분배소득 통계는 과연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분배소득 추계 방법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역 소득 통계의 신뢰성과 과제 등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3절에서는 역외 유출 규모를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양 측면에서 파악하여 어느 것이 중요한 요인이며, 그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 DB와 2010년 경제총조사의 영업 잉여 자료 및 총사업체조사의 본사, 지사·지점·영업소의 지역별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유출지역과 방향도 분석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언급한다.

## 2. 지역 소득 추계 방법과 우리나라의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

### 1) 지역 소득의 추계 방법

생산과 지출 측면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작성되어왔다. 그러나 분배 측면의 지역 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지역 분배소득을 추정·발표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일본, 호주 등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2000년도까지 연장한 분배측면의 지역 소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통계청, 2012c: 78). 영국도 2013년부터 비로소 분배소득을 작성, 공표하고 있다(Trevor & Bethan, 2013).

국민계정과 달리 지역계정은 지역별로 제도부분 혹은 산업활동의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내총생산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활용된다. 첫째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국민총생산을 추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거주단위의 개별 자료를 총합하는 방식이다. 주로 제조업생산이나 중간소비 등을 이 방식으로 추계하며, 관련 자료가 입수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둘째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자료를 적당한 매개지표(예: 지역별 부가가치 중 피용자 보수 비율)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지역별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는 농업생산이나 부가가치액 등을 주로 이 방법으로 추계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mixe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Lacey, 2001; Kahoun 2011).

한편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은 근무지 기준(workplace base)과 거주지 기준(residence base)의 각기 다른 통계를 통해 작성된다. 근무지 기준의 피용자 보수는 전사업자 조사와 고용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추계하며, 거주지 기준의 피용자 보수는 국세청의 고용자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험, 연금신고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로 추계할 수 있다. 한편 영업 잉여에는 비법인기업(자영업자 등)에서 발생하는 혼합소득(mixed income)과 법인의 영업 잉여(operating surplus)가 포함되며, 생산측면의 법인 영업 잉여는 소재지 기준(workplace base)으로 조사된 광공업 조사나 총사업체 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할 수 있다. 물론 광공업 조사나 총사업체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농업, 금융보험 등의 부문은 별도의 방식으로 추계한다.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은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소득자료를 가

지고 파악할 수 있다.

분배소득을 추정하는데 최대 난제는 법인 소재지 기준의 영업 잉여를 지역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인의 영업 잉여는 총사업체 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지(근무지) 기준으로 취합될 수밖에 없다. “즉, 분배면의 영업 잉여는 지역별로 배분하기 어려운데, 생산자의 영업 잉여는 사업체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부문별이나 산업별 영업 잉여는 전국 차원에서만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산업별, 지역별로 분배측면(거주지)에서 배분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국가에서는 없다”(Kahoun, 2011: 3~4). 따라서 영국, 일본 등 분배소득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업 잉여와 혼합소득이 생산과 분배측면에서 같다고 가정할 후에 피용자 보수만 통근에 따라 생산과 분배소득이 다른 것으로 상정하여 생산과 분배소득을 추계하고 있다(Trevor & Bethan, 2013; 內閣府, 2013). 또 본사와 사업체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는 기업인 경우 영업 잉여를 어떻게 지역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UN의 SNA 1993에서는 본사의 부가가치를 전부 지사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EUROPEAN COMMISSION, 1996; EUROSTAT, 1995), 신 SNA 2008에서는 본사계정을 별도로 두고 본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본사계정에 산정하는 방식을 권유하는데, 이 방식은 캐나다와 같이 본사활동조사 통계가 갖춰진 나라에서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UN, 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배면의 영업 잉여 추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sup>4)</sup> 먼저 생산계정의 영업 잉여를 전 사업체조사 등의 자료에서 추계한다. 이때 영업 잉여는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별로 되어 있으므로, 분배계정의 영업 잉여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제도부문별(법인과 개인)로 나누어야 하고, 다시 발생지 기준을 소재지 기준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산계정에서 추계한 영업 잉

4) 통계청 소득통계과 분배소득 담당자와의 면담결과(2015년 9월 25일).



여 총액을 가지고, 분배계정에서 먼저 법인과 개인(자영업)의 제도부문별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생산 영업 잉여의 법인 영업 잉여는 전부 법인 소재지별로 옮기고, 자영업자의 혼합소득은 다시 개인 피용자 보수와 개인 영업 잉여로 나누어 추계한다. 법인과 개인의 제도부문별로 나눌 때는 국세청의 법인세 소득신고자료를 가지고 먼저 법인 영업 잉여액을 추계하고, 나머지를 개인 영업 잉여로 계상한다. 지역별 법인 영업 잉여는 국세청의 법인세 소득신고자료를 가지고 생산 면에서의 법인영업 잉여 총액을 지역별 국세청의 법인세 소득신고액 비율로 배분한다. 이때 법인 영업 잉여는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잡는다. 따라서 생산계정에서 추계한 법인영업잉여 발생지 기준이라면 분배계정의 영업 잉여는 본사 소재지 기준이 된다.

## 2) 우리나라의 생산 및 분배소득과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전에 상기의 방식으로 추계된 2013년 지역 소득 통계를 가지고 지역 간 소득 유출의 현황을 보기로 하자.

소득의 역외 유출규모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GRDP(지역 내 총생산)와 분배 GRNI(지역민 총소득)의 차인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박경, 2011; 통계청, 2013).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다시 순수취 재산소득과 순수취요소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수취 재산소득은 분배 GRNI의 재산소득의 원천에서 재산소득의 사용을 빼서 구할 수 있고, 순수취요소소득은 생산계정의 지역 내 요소소득에서 분배계정의 요소소득을 빼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다음 관계에 따라 생산 GRDP에서 분배 GRNI를 빼서 구한 것이나 지역 내 순생산에서 지역 내 순본원소득을 빼서 구한 것이 마찬가지로이므로 여기서는 역외 소득 유출입을 지역 내 순생산과 지역 내 순본원소득의 차를 가지고 보기로 한다.<sup>5)</sup>

<그림 2> 지역 내 총생산, 총 본원소득 및 순수취 본원소득의 관계

|                |         |           |        |            |        |
|----------------|---------|-----------|--------|------------|--------|
| 지역 내 총생산(시장가격) |         |           |        |            |        |
| 지역 내 순생산(시장가격) |         |           |        |            | 고정자본소모 |
| 지역 내 요소소득      |         | 순생산세      |        |            |        |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순생산물세     | 기타 생산세 |            |        |
| 총 본원소득         |         |           |        |            |        |
| 순본원소득          |         |           |        |            | 고정자본소모 |
|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         | 지역 내 요소소득 |        | 순생산세 및 수입세 |        |
| 순수취 재산소득       | 순수취요소소득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        |

- ① 지역 내 순생산=생산 GRDP(지역 내 총생산)-고정자본소모이고,
- ② 지역 내 순본원소득=분배 GRNI(총본원소득)-고정자본소모이므로,
- ③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생산 GRDP-분배 GRNI=지역 내 순생산-지역 내 순본원소득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의 유출입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경기도는 소득의 순수입이, 나머지 지방 도 지역과 울산은 소득의 순수출이 일어나고 있다. 16개 시도 중 순수출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서 지역 내 순생산의 약 33%가 역외로 유출되며, 전남, 경북, 울산, 경남 등지에서도 약 22~31%까지 소득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순수입이 큰 지역은 대구, 서울, 부산 등으로, 대구의 경우 지역 내 순생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

5) 박경(2011)에서는 SNA1993 기준의 구계열 지역 소득 통계의 지역별 생산 GRDP의 고정자본소모분이 분배 GRNI의 고정자본소모분과 달랐기 때문에 지역 내 순생산에서 지역 내 순본원소득을 뺀 값으로 지역의 순수취 본원소득 크기를 구했으나, 2013년부터 SNA2008 기준으로 수정된 신계열 지역 소득 통계에서는 생산과 분배면의 지역별 고정자본소모분이 같도록 바로 잡았기 때문에 생산 GRDP에서 분배 GRNI를 바로 빼서 구해도 상관없다(통계청, 2013 참조).

<표 1> 지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입(2013년)

(단위: 10억 원, %)

|    | 지역 내 순생산 (시장가격)① | 순본원소득②  | ③=①/② (%) | 지역 외 순수취 본원소득 |           |          |
|----|------------------|---------|-----------|---------------|-----------|----------|
|    |                  |         |           | 역외유출입 ④(①-②)  | 순수취 재산소득⑤ | 순수취요소소득⑥ |
| 서울 | 270,513          | 322,973 | 119.4     | 52,460        | 2,887     | 49,573   |
| 부산 | 58,224           | 69,033  | 118.6     | 10,809        | 2,600     | 8,209    |
| 대구 | 37,288           | 44,915  | 120.5     | 7,627         | 2,997     | 4,630    |
| 인천 | 50,805           | 55,192  | 108.6     | 4,387         | -2,109    | 6,496    |
| 광주 | 24,737           | 27,235  | 110.1     | 2,498         | 1,220     | 1,278    |
| 대전 | 26,060           | 29,451  | 113.0     | 3,391         | 135       | 3,256    |
| 울산 | 55,566           | 41,156  | 74.1      | -14,411       | 161       | -14,572  |
| 경기 | 248,341          | 283,521 | 114.2     | 35,180        | -1,469    | 36,649   |
| 강원 | 27,849           | 24,049  | 86.4      | -3,800        | 1,416     | -5,216   |
| 충북 | 36,808           | 30,310  | 82.3      | -6,498        | 1,406     | -7,904   |
| 충남 | 73,312           | 49,094  | 67.0      | -24,218       | 28        | -24,246  |
| 전북 | 33,895           | 29,126  | 85.9      | -4,769        | 1,616     | -6,386   |
| 전남 | 49,262           | 34,259  | 69.5      | -15,003       | 1,478     | -16,481  |
| 경북 | 67,982           | 47,954  | 70.5      | -20,028       | -2,509    | -17,519  |
| 경남 | 80,027           | 62,243  | 77.8      | -17,784       | 542       | -18,326  |
| 제주 | 10,484           | 10,842  | 103.4     | 358           | 863       | -504     |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 통계 DB

<표 2> 역외 소득 유입지역과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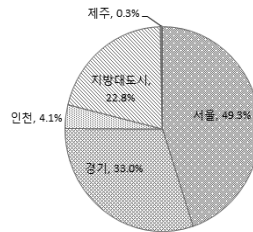
(단위, 10억 원, %)

| 지역 구분    | 순유출입액   | 구성비 (%) |      |
|----------|---------|---------|------|
| 수도권      | 합       | 92,027  | 86.4 |
|          | 서울      | 52,460  | 49.3 |
|          | 경기      | 35,180  | 33.0 |
|          | 인천      | 4,387   | 4.1  |
| 지방대도시    | 24,324  | 22.8    |      |
| 제주       | 358     | 0.3     |      |
| 지방 순수출총액 | 116,701 | -       |      |

자료: <표 1>을 기초로 작성

역 내 순생산의 약 19%에 달하는

<그림 3> 소득 유입액의 지역별 비중(%)



자료: <표 1>을 기초로 작성.

소득이 순유입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의 순유입액이 약 52조 원으로 가장 크다(<표 1>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 도 지역 및 울산에서 유출된 소득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울산 제외)로 유입되는 것이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 흐름의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득 유출 경로는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로이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지방의 소득 유출 총액 약 116.7조 원 중 약 86.4%인 92조 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으며, 나머지 약 22.5%인 22.8조 원만 인근 지방 대도시로 유출되었다(<표 2> 참조). 이렇게 볼 때, 그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 논의가 인구나 경제, 정치적 중추기능의 집중 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소득의 이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외 소득유출을 순수취 재산소득과 순수취요소소득으로 나누어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역외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순수취요소소득의 크기이다. 더구나 순유출지역이더라도 순수취 재산소득은 순유입의 경우가 많아 순수취 재산소득은 지역별 전체 소득의 순유출입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sup>6)</sup> 따라서 역외 유출입을 결정하는 요소는 순수취 재산소득보다는 순수취요소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간 소득유출의 형태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득(영업 잉여) 유출입과 근로소득(피용자 보수) 유출입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

### 3) 지역 분배소득 추계의 신뢰성

이렇게 파악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이전 현황을 보면 몇 가지의 문이 제기된다. 첫째로, 충남, 전남, 울산 등의 지역에서 지역 소득의 약

6) 단, 광주와 제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역외 유출입 요인으로 순수취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다.

30% 이상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영국의 경우 지역별로 겨우 5~10%, 일본의 경우 5% 정도만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Trevor & Bethan, 2013 및 内閣府, 2010), 다른 나라에 비해 유출 규모가 과도하다. 따라서 과연 실제로 그만큼 기업 소득 이전이나 통근 등으로 소득유출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지역 분배소득의 통계작성 상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이 소득유출이 기업 소득, 즉 영업 잉여의 역외 유출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의 지역 분배소득에서 추계하는 영업 잉여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분배측면의 지역별 영업 잉여 추계는 쉽지 않고 엄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각국에서 지역 분배소득을 추계할 때 별도로 추계하지 않고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로 나누어, 분배소득에서 추계한 각각의 통계가 얼마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하자.

#### (1) 피용자 보수 추계의 신뢰성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은 각각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의 소득 통계를 가지고 추계한다. 따라서 피용자 보수의 경우 실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통근 통계와 지역 소득에서 추계한 근무지 및 거주지 기준 피용자 보수 통계를 비교한다면 지역 소득 추계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양자는 각기 다른 소스(source)로부터 얻은 통계이기 때문이다.

<표 3>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통근자 순유출입과 지역 소득에서 추계한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비교한 표로서,<sup>7)</sup> 표에서 순유출 통근자(net out commuters)가 음인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통근자가 외지로 나가는 통근자보다 더 많은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거

7) 2010년 기준의 자료임. 인구주택총조사가 2010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소득도 2010년 기준 자료를 가지고 비교했음.

<표 3> 지역별 통근자 현황 및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 현황(2010년 기준)  
(단위: 천 명, 10억 원, %)

|    | 유입<br>통근자<br>① | 유출<br>통근자<br>② | 순유출<br>통근자<br>③<br>(②-①) | 총<br>통근자 | 총취업<br>자 수<br>④ | 순유출<br>통근자<br>비중<br>(③/④%) | 분배<br>피용자<br>보수<br>⑤ | 피용자<br>보수<br>순유출<br>입⑥ | 피용자<br>보수<br>순유출<br>입 비중<br>(⑥/⑤%) |
|----|----------------|----------------|--------------------------|----------|-----------------|----------------------------|----------------------|------------------------|------------------------------------|
| 서울 | 1,217.9        | 515.5          | -702.4                   | 4,444.3  | 4,936           | -14.2                      | 138,269              | 7,607                  | 5.5                                |
| 부산 | 66.2           | 134.7          | 68.4                     | 1,409.2  | 1,574           | 4.3                        | 35,169               | 6,439                  | 18.3                               |
| 대구 | 38.7           | 118.3          | 79.6                     | 996.9    | 1,169           | 6.8                        | 22,900               | 5,009                  | 21.9                               |
| 인천 | 170.5          | 258.4          | 87.9                     | 1,167.6  | 1,320           | 6.7                        | 29,898               | 4,038                  | 13.5                               |
| 광주 | 18.3           | 68.2           | 49.9                     | 600.6    | 664             | 7.5                        | 15,065               | 2,985                  | 19.8                               |
| 대전 | 34.0           | 67.2           | 33.3                     | 617.7    | 701             | 4.7                        | 17,059               | 3,235                  | 19.0                               |
| 울산 | 40.0           | 20.6           | -19.5                    | 473.1    | 533             | -3.7                       | 17,093               | -2,718                 | -15.9                              |
| 경기 | 559.9          | 1,216.8        | 656.9                    | 4,975.1  | 5,674           | 11.6                       | 130,600              | 17,382                 | 13.3                               |
| 강원 | 20.6           | 15.5           | - 5.1                    | 641.8    | 667             | -0.8                       | 12,534               | -2,126                 | -17.0                              |
| 충북 | 46.5           | 30.5           | -15.9                    | 671.6    | 737             | -2.2                       | 14,303               | -2,237                 | -15.6                              |
| 충남 | 95.1           | 45.2           | -50.0                    | 966.8    | 974             | -5.1                       | 19,548               | -13,318                | -68.1                              |
| 전북 | 15.7           | 12.5           | - 3.2                    | 768.4    | 817             | -0.4                       | 13,821               | -1,710                 | -12.4                              |
| 전남 | 68.6           | 19.0           | -49.6                    | 826.8    | 885             | -5.6                       | 12,997               | -8,727                 | -67.1                              |
| 경북 | 130.3          | 43.6           | -86.7                    | 1,212.9  | 1,361           | -6.4                       | 22,780               | -10,793                | -47.4                              |
| 경남 | 118.2          | 74.7           | -43.5                    | 1,416.5  | 1,532           | -2.8                       | 31,010               | -5,994                 | -19.3                              |
| 제주 | 0.1            | 0.1            | 0.0                      | 259.4    | 284             | 0.0                        | 4,294                | -119                   | -2.8                               |

자료: 통계청 인구통계조사 통근자 현황 및 지역 소득 통계 DB

주지 기준의 피용자 보수는 근무지 기준의 피용자 보수보다 작게 되며,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표 3>과 <그림 4>에서 보면, 인구통계의 통근자 순유출입(net out commuters)과 거주지 및 근무지 피용자 보수 격차(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sup>8)</sup>)의 차이와 부호는 거의 유사하다. 즉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이 같다. 이것은 지역 분배

8) 표에서 지역별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 규모는 통계청의 자료인 생산요소소득의 피용자 보수와 분배소득상 피용자 보수의 차이를 통해 구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절의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유출입의 상대적 크기를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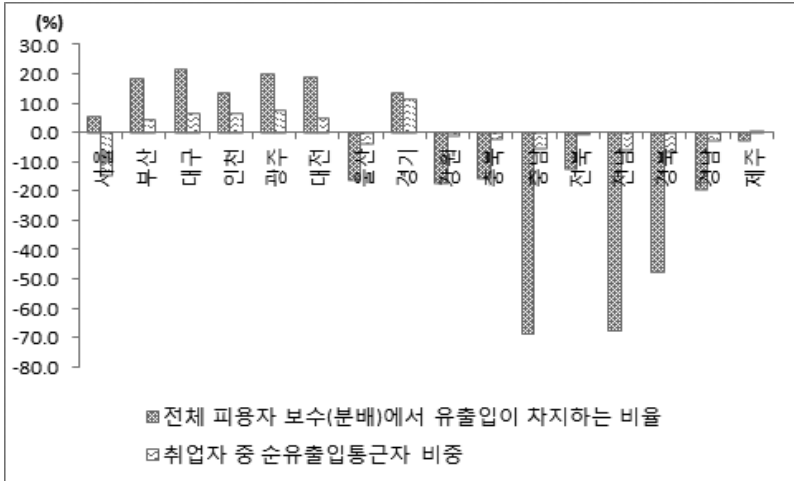
소득의 피용자 보수 추계가 일반적으로 통근자 유출입을 반영하며, 거주지 및 근무지 기준의 지역 소득 피용자 보수의 추계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근자 순유출입과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의 규모가 다르며, 통근자 순유출입 비중보다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이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타 지역으로의 통근자가 지역 내 통근자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sup>9)</sup>

한편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의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추계 방법론에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점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서울은 유입통근자가 많은데 오히려 피용자 보수는 유출되지 않고 순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자보다 외지로 나가는 통근자의 보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서울의 높은 지가와 주택가격 때문에 주변 위성도시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거주지가 도심에는 고소득 거주지가 형성됨으로써, 이런 우리나라 서울의 특징 때문에 유입 통근자가 많더라도 실제 피용자 보수는 순유입을 기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교외 지역에 오히려 고소득자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심부에는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런던의 경우 순유입 통근자가 많으면 그만큼 피용자 보수는 유출되는 것과 매우 다른 결과이다(<표 4>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타당한지, 아니면 통계 추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실제 유출입 통근자의 보수를 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도심-고소득자, 주변부-저소득 근로자 거주패턴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동경의 경우 통근자 순유입은 서울과 달리 피용자 보수의 유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박정, 2011: 107).

둘째로 통근자 순유출입과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의 규모를 비교하면 후자가 너무 크다. 즉, 통근자 순유출입 규모는 취업자 대비 5~14%(절댓값)인 반면에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의 규모는 분배피용자 보수 대비 13~68%(절댓값)나 된다. 특히 충남과 전남은 거의 생산(근무지) 피용자 보

9) 그러나 이것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그림 4> 지역별 순 유출입 통근자 및 순 피용자 보수 유출입 비중 비교



자료: <표 3>를 기초로 작성

수의 약 67~68%가 외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근자 유출입 상대적 규모와 지역 소득 통계의 소득순유출입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한 자료가 <표 4>인데, 후자가 전자보다 크더라도 최대격차는 약 10% 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근자를 조사할 때 주말통근자의 경우 실제 통근자로 파악되지 않거나, 통근자 조사가 10%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의 외지 통근자 비율은 약 5%이나, 실제로는 약 21.7%가 수도권 또는 대전 등지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충남도, 2012: 30).<sup>10)</sup> 그렇더라도 충남과 전남 같은 경우 생산(근무지) 피용자 보수의 약 67~68%가 외지로 유출된다고

10)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산단별 중장기 종합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 충남 15개 시군의 793개 기업체의 종사자 총 2,9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표 4> 영국 지역별 피용자 보수 순유출입 및 통근인구 규모의 비율  
(단위: %)

|                  |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 비중 <sup>1)</sup> |       |       | 통근인구 순유입 비중 <sup>2)</sup> |      |      |
|------------------|-------------------------------|-------|-------|---------------------------|------|------|
|                  | 2009                          | 2010  | 2011  | 2009                      | 2010 | 2011 |
| North East       | -5.2                          | -5.2  | -4.3  | -1.5                      | -1.7 | -1.5 |
| North West       | 3.7                           | 1.8   | 0.4   | 0.9                       | 0.8  | 1.1  |
| Yorks & Humber   | 2.1                           | 1.6   | 2.2   | 0.2                       | -0.5 | -0.5 |
| East Midlands    | -9.2                          | -6.0  | -5.1  | -4.9                      | -5.2 | -4.8 |
| West Midlands    | 1.5                           | 1.4   | 0.0   | -0.2                      | -0.4 | -0.6 |
| East of England  | -15.8                         | -16.2 | -15.3 | -8.4                      | -7.9 | -7.8 |
| London           | 18.0                          | 20.0  | 22.7  | 12.2                      | 12.6 | 12.3 |
| South East       | -9.5                          | -9.2  | -11.4 | -4.5                      | -4.6 | -4.6 |
| South West       | -2.1                          | -1.4  | -4.2  | 0.6                       | 1.1  | 0.5  |
| Wales            | -3.0                          | -5.3  | -3.9  | -2.3                      | -2.5 | -2.1 |
| Scotland         | -1.0                          | -4.2  | -4.5  | 0.4                       | 0.5  | 0.4  |
| Northern Ireland | -0.5                          | -4.2  | -4.0  | -1.3                      | -1.4 | -1.4 |

주 1) 지역별 피용자 보수 총액 중 순유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지역별 총취업자 중 통근자 순유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Trevor Fenton & Bethan West, 2013.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역별로 외지 통근자에 대한 엄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피용자 보수 통계 추계 상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영업 잉여 추계의 신뢰성

지역 소득 생산 및 분배계정의 영업 잉여는 피용자 보수와 마찬가지로 각각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발생지 기준과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하며, 전자는 총사업체조사 등 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후자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따라서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본사·본점 및 공장·지사의 지역별 분포 및 이들 간 기업소득의 이전 현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발생지 및 소재지 기준의 영업 잉여 추계가 우리나라의 본사 및 공장·지사의 지역별 분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려면, 먼저 지역별 각 사업체의 공장·지사의 본사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의 2010년 기준의 전국총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공장·지사의 본사 소재지 행렬 표를 구했다(<부록 2> 참조).<sup>11)</sup> 전국총사업체조사 원자료에는 개별 공장·지사의 본사소재지 지역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시도별로 합산하면 지역별 공장·지사의 본사 소재지 행렬을 구할 수 있다. 행렬은 종업원 수로 만들었는데, 사업체수로 하면 기업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업원 수로 합산하는 것이 영업 잉여 이전 규모를 파악하는데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 행렬 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순유출입 종사자 현황을 구하고 이것을 지역 소득통계의 순유입영업 잉여 규모와 방향을 비교한 것이 <표 5>인데, 표에서 보듯이 서울의 경우 본사를 서울에 둔 서울 이외 지역의 공장·지사의 종업원 수가 1,412천 명(유입 지사종업원 수)인데 반하여 본사를 타 지역에 둔 서울의 공장·지사의 종업원 수는 130천 명(유출 지사종업원 수)으로, 이를 상계한 순유입 공장·지사 종업원 수는 1,281천 명이다. 이 순유입 공장·지사의 종업원 수에 종사자 1인당 영업 잉여를 곱한 규모만큼 영업 잉여가 유입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지역 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서울의 영업 잉여 순유입액은 약 50,402십억 원이 나 된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본사 입지에 따라 재배분한 공장·지사의 종업원은 전부 유출을 보인다.<sup>12)</sup> 이것을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순유출입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총사업체조사 자료

11) 2010년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앞의 피용자 보수 추계의 신뢰성 검토와 시기를 맞추고, 또 공장·지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를 추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0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우리나라의 수도권 본사집중 현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이다. 전국의 본사 총 41,354개 중에 수도권에 사업체 수로는 약 58.9%가, 종사자 수로는 약 63.%나 집중되어 있다(박경 외, 2013: 91).

< 표 5 > 본사·지사입지에 따른 지역별 순유출입 종사자 현황과 지역 소득통계의 순유입 영업 잉여

(단위: 명, %, 10억 원)

|    | 단독<br>종사자<br>수 | 본사<br>종사자<br>수 | 지사<br>종사자<br>수 | 유출<br>지사<br>종사자<br>수 | 유입<br>지사<br>종사자<br>수 | 순유입<br>지사<br>종사자<br>수 | 총종업원<br>수 대비<br>순유입지<br>사종업원<br>비중 | 생산<br>영업<br>잉여 | 분배<br>영업<br>잉여 | 순<br>유입<br>영업<br>잉여 | 생산영업<br>잉여대비<br>순유입<br>영업<br>잉여<br>비중 |
|----|----------------|----------------|----------------|----------------------|----------------------|-----------------------|------------------------------------|----------------|----------------|---------------------|---------------------------------------|
| 서울 | 2,836,476      | 995,689        | 655,192        | 130,251              | 1,411,679            | 1,281,428             | 28.6                               | 87,886         | 138,287        | 50,402              | 57.3                                  |
| 부산 | 887,412        | 117,341        | 200,011        | 143,654              | 44,910               | -98,744               | -8.2                               | 18,765         | 15,357         | -3,409              | -18.2                                 |
| 대구 | 605,245        | 63,448         | 117,794        | 83,524               | 23,753               | -59,771               | -7.6                               | 11,519         | 10,072         | -1,447              | -12.6                                 |
| 인천 | 616,136        | 93,597         | 118,015        | 96,252               | 34,866               | -61,386               | -7.4                               | 16,041         | 14,446         | -1,595              | -9.9                                  |
| 광주 | 352,214        | 51,327         | 95,674         | 79,363               | 18,671               | -60,692               | -12.2                              | 7,635          | 5,322          | -2,313              | -30.3                                 |
| 대전 | 337,994        | 60,553         | 94,175         | 72,810               | 59,025               | -13,785               | -2.8                               | 7,083          | 6,355          | -727                | -10.3                                 |
| 울산 | 275,685        | 59,816         | 98,779         | 84,415               | 14,180               | -70,234               | -16.2                              | 18,345         | 9,989          | -8,356              | -45.5                                 |
| 경기 | 2,731,048      | 379,468        | 638,636        | 502,879              | 196,446              | -306,434              | -8.2                               | 72,310         | 81,525         | 9,215               | 12.7                                  |
| 강원 | 381,624        | 30,237         | 78,248         | 63,978               | 5,925                | -58,054               | -11.8                              | 7,153          | 4,901          | -2,252              | -31.5                                 |
| 충북 | 384,567        | 51,021         | 97,957         | 80,494               | 15,842               | -64,652               | -12.1                              | 10,814         | 6,439          | -4,374              | -40.5                                 |
| 충남 | 476,623        | 81,975         | 143,962        | 122,584              | 29,824               | -92,759               | -13.2                              | 22,566         | 11,806         | -10,760             | -47.7                                 |
| 전북 | 425,795        | 41,396         | 98,612         | 74,217               | 10,487               | -63,729               | -11.3                              | 10,941         | 6,803          | -4,138              | -37.8                                 |
| 전남 | 432,988        | 47,269         | 89,668         | 72,966               | 8,306                | -64,660               | -11.3                              | 17,318         | 8,641          | -8,677              | -50.1                                 |
| 경북 | 657,138        | 90,038         | 180,132        | 151,905              | 27,023               | -124,881              | -13.5                              | 24,401         | 22,936         | -1,465              | -6.0                                  |
| 경남 | 872,765        | 114,840        | 185,772        | 149,896              | 26,792               | -123,105              | -10.5                              | 26,359         | 17,089         | -9,269              | -35.2                                 |
| 제주 | 160,103        | 14,591         | 27,982         | 20,638               | 2,095                | -18,543               | -9.1                               | 3,422          | 2,588          | -834                | -24.4                                 |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통계 및 경제총조사, 총사업체 조사 2010년 DB

를 가지고 공장·지사의 종업원 수를 본사로 소재지로 재배분하여 계산한 지사종사자의 순유출입 방향과, 지역 소득 통계에서 추계한 지역별 영업 잉여 순유출입 방향은 거의 일치하므로(단, 경기 제외),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추계는 유의성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지사의 소재지 분포와 지역 소득의 영업 잉여 추계를 비교할 때 역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경기도는 본사 위치를 고려할 때 역외(주로 서울)에 본사를 둔 공장·지사가

< 표 6 > 지역별 공장·지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를 고려한 순영업 잉여 유출입과 지역 소득의 영업 잉여 유출입비교(2010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십억 원, %)

|    | 지사종사자1인당<br>영업 잉여<br>(경총자료)<br>(백만 원) | 순유출입 영업<br>잉여(순유입종사<br>자 수×1인당<br>영업 잉여)<br>(십억 원)① | 지역 소득<br>계정 순유출입<br>영업 잉여<br>(십억 원)② | ②-①<br>(십억<br>원) | 생산 영업<br>잉여 대비<br>순유출입<br>비중(①의<br>종사자 수<br>기준)(%) | 생산 영업 잉여<br>대비 순유출입<br>비중(②의 실제<br>지역 소득 통계<br>기준)(%) |
|----|---------------------------------------|---|--------------------------------------|------------------|--|---|
| 서울 | 23.6                                  | 67,246  | 50,402                               | 16,845           | 76.5   | 57.3  |
| 부산 | 23.3                                  | -1,491  | -3,409                               | 1,918            | -7.9   | -18.2   |
| 대구 | 24.8                                  | -647  | -1,447                               | 800              | -5.6   | -12.6   |
| 인천 | 37.1                                  | -2,290  | -1,595                               | -695             | -14.3  | -9.9  |
| 광주 | 36.0                                  | -1,254  | -2,313                               | 1,059            | -16.4  | -30.3   |
| 대전 | 29.7                                  | 349   | -727                                 | 1,077            | 4.9  | -10.3   |
| 울산 | 155.4                                 | -9,445  | -8,356                               | -1,089           | -51.5  | -45.5   |
| 경기 | 28.7                                  | -6,656  | 9,215                                | -15,871          | -9.2   | 12.7  |
| 강원 | 22.2                                  | -1,582  | -2,252                               | 670              | -22.1  | -31.5   |
| 충북 | 66.1                                  | -3,957  | -4,374                               | 417              | -36.6  | -40.5   |
| 충남 | 102.2                                 | -8,814  | -10,760                              | 1,946            | -39.1  | -47.7   |
| 전북 | 51.9                                  | -3,410  | -4,138                               | 728              | -31.2  | -37.8   |
| 전남 | 147.0                                 | -9,324  | -8,677                               | -648             | -53.8  | -50.1   |
| 경북 | 90.0                                  | -11,591   | -1,465                               | -10,125          | -47.5  | -6.0  |
| 경남 | 44.1                                  | -6,400  | -9,269                               | 2,869            | -24.3  | -35.2   |
| 제주 | 25.8                                  | -734  | -834                                 | 100              | -21.5  | -24.4   |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 및 경제총조사 2010년 DB에서 작성.

더 많으나,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는 유입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총 종업원 수 대비 순유출입 지사종업원 수 비중과 생산영업 잉여 대비 순유출입 영업 잉여 규모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자가 훨씬 크다. 실제 순유출입 영업 잉여는 공장·지사의 순유출입 종업원 수에 공장·지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를 곱해준 것이기 양자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본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일수록 대규모 기

업일 가능성, 즉 종사자 1인당 영업 잉여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총 종업원 수 대비 순유출입 지사종업원 수 비중이 유사한 지역이라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대체로 약 10~13%), 영업 잉여 유출규모는 약 6~50%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역별 지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2010년 기준의 경제총조사에서 지역별 공장 및 지사의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액을 구하여 공장·지사 종업원의 유출입 수 행렬에 곱해 영업 잉여 순유출입액을 추정된 것과 실제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순유출입 규모를 비교한 것이 <표 6>인데, 이 경우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다만 경기, 대전, 경북 지역은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액으로 보정하더라도 양자의 방향이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추계 방법론상에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경제총조사의 영업 잉여는 사업체만 포함하나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는 농림수산업 가계의 영업 잉여까지 포함하며, 경제총조사에서 구한 공장·지사 종업원 1인당 영업 잉여는 지역별 평균개념이고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는 개별 기업 실제 영업 잉여 자료이므로, 다소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 3. 역외소득 유출 형태와 유출지역

#### 1)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상대적 크기

역외 소득유출은 재산소득,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3가지 형태로 유출된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재산소득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외 유출규모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요인이 역외유출 규모와 방향에 중요한 결정 요인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허문구 외(2015)는 2000~2012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해서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 어느 요인이 역외 소득 유출에 더 중요한 요인인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본사 비중은 순수취본원소득과 역관계에 있고, 반면에 역외 통근비중의 증감은 순수취본원소득의 증감과 순관계에 있어 본사 입지보다는 역외 통근이 지역 소득유출입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허문구 외, 2015: 27~30).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통계 DB에는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이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로 나누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허문구 외(2015)는 통근자 유출입과 본사 입지의 영향을 패널분석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분배 요소소득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상 생산 측면의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를 먼저 추계하여야 하므로 통계청에서는 이를 기본 자료로 추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여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에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허문구 외(2015)의 분석이 타당한지 논의해 본다.

다음 <표 7>과 <그림 5> 및 <그림 6>에서 보듯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울산 제외)는 순수취요소소득이 +이며, 나머지 지방 도 지역과 울산은 순수취요소소득이 -로, 지방 도 지역과 울산에서 유출된 소득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울산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로 유입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모로 보면 지방 대도시는 소득

< 표 7 > 지역별 피용자 보수 및 영업 잉여의 순유출입

(단위: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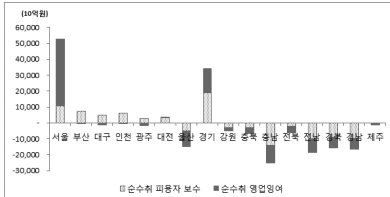
| 구분 | 생산요소소득  |        |         |        | 분배요소소득  |         |         |         | 요소소득의 역외유출입 |            |           |          |            |           |
|----|---------|--------|---------|--------|---------|---------|---------|---------|-------------|------------|-----------|----------|------------|-----------|
|    | 2010    |        | 2012    |        | 2010    |         | 2012    |         | 2010        |            |           | 2012     |            |           |
|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순수취요소 소득    | 순수취 피용자 보수 | 순수취 영업 잉여 | 순수취요소 소득 | 순수취 피용자 보수 | 순수취 영업 잉여 |
| 서울 | 130,662 | 87,886 | 142,384 | 93,428 | 138,269 | 138,287 | 152,962 | 135,605 | 58,008      | 7,607      | 50,402    | 52,755   | 10,578     | 42,177    |
| 부산 | 28,731  | 18,765 | 31,978  | 17,288 | 35,169  | 15,357  | 39,566  | 16,988  | 3,030       | 6,439      | -3,409    | 7,289    | 7,588      | -300      |
| 대구 | 17,891  | 11,519 | 20,369  | 12,046 | 22,900  | 10,072  | 25,505  | 11,019  | 3,562       | 5,009      | -1,447    | 4,109    | 5,136      | -1,027    |
| 인천 | 25,860  | 16,041 | 27,482  | 14,328 | 29,898  | 14,446  | 33,603  | 14,001  | 2,443       | 4,038      | -1,595    | 5,795    | 6,122      | -327      |
| 광주 | 12,080  | 7,635  | 13,822  | 7,587  | 15,065  | 5,322   | 16,546  | 6,072   | 672         | 2,985      | -2,313    | 1,210    | 2,725      | -1,515    |
| 대전 | 13,824  | 7,083  | 15,446  | 7,683  | 17,059  | 6,355   | 18,757  | 7,781   | 2,508       | 3,235      | -727      | 3,388    | 3,290      | 97        |
| 울산 | 19,811  | 18,345 | 24,337  | 17,596 | 17,093  | 9,989   | 19,288  | 7,679   | -11,074     | -2,718     | -8,356    | -14,966  | -5,049     | -9,917    |
| 경기 | 113,218 | 72,310 | 126,863 | 75,358 | 130,600 | 81,525  | 145,962 | 90,447  | 26,597      | 17,382     | 9,215     | 34,188   | 19,098     | 15,089    |
| 강원 | 14,660  | 7,153  | 16,375  | 7,247  | 12,534  | 4,901   | 13,534  | 5,265   | -4,378      | -2,126     | -2,252    | -4,823   | -2,841     | -1,982    |
| 충북 | 16,541  | 10,814 | 18,641  | 11,385 | 14,303  | 6,439   | 15,772  | 7,501   | -6,612      | -2,237     | -4,374    | -6,753   | -2,869     | -3,884    |
| 충남 | 32,865  | 22,566 | 36,480  | 23,108 | 19,548  | 11,806  | 22,619  | 11,716  | -24,078     | -13,318    | -10,760   | -25,253  | -13,860    | -11,392   |
| 전북 | 15,531  | 10,941 | 18,068  | 11,091 | 13,821  | 6,805   | 15,910  | 6,985   | -5,848      | -1,710     | -4,138    | -6,264   | -2,158     | -4,106    |
| 전남 | 21,724  | 17,318 | 23,958  | 17,222 | 12,997  | 8,641   | 14,062  | 8,468   | -17,404     | -8,727     | -8,677    | -18,649  | -9,896     | -8,754    |
| 경북 | 33,573  | 24,401 | 34,509  | 25,117 | 22,780  | 22,936  | 25,423  | 18,667  | -12,258     | -10,793    | -1,465    | -15,536  | -9,085     | -6,451    |
| 경남 | 37,004  | 26,359 | 43,493  | 25,059 | 31,010  | 17,089  | 34,012  | 18,157  | -15,263     | -5,994     | -9,269    | -16,382  | -9,481     | -6,901    |
| 제주 | 4,413   | 3,422  | 5,222   | 3,720  | 4,294   | 2,588   | 4,891   | 2,913   | -954        | -119       | -834      | -1,138   | -331       | -807      |

자료: 통계청 자료

유입 지역이기는 하여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유입 규모는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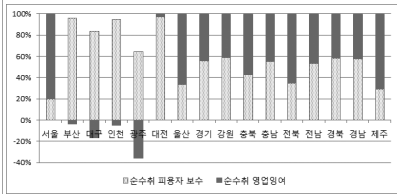
이를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로 나누어 보면, 피용자 보수의 경우 울산은 제외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경기는 순유입이 일어나고, 나머지 지방 도 지역과 울산은 순유출이 일어난다. 영업 잉여의 경우 이와 달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순유출이 나타난다. 이것은 통근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유출입은 주로 대도시와 인근 도 지역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 대도시도 피용자 보수의 순유입이 일어나, 본사 입지에 따른 영업소득의 유출은 지방 대도시나 지방 도를 불구하고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별 순수취 피용자 보수 및 영업 잉여의 규모(2012년)



자료: <표 9>에서 작성

<그림 6> 지역별 순수취 피용자 보수 및 영업 잉여의 비중(2012년)



자료: <표 9>에서 작성

한편 순수취요소소득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순수취요소소득이 +인 지역 중에 서울의 경우는 영업 잉여 순유입의 상대적 크기가 더 크고, 경기도는 양자가 비슷하며,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대도시의 경우는 피용자 보수 순유입의 비중이 더 크다(<그림 5> 및 <그림 6> 참조). 순수취요소소득이 -인 지역 중에서는 울산,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영업 잉여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 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허문구 외(2015)는 역외 소득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본사업지보다는 통근자의 지역 내 정착을 더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4)</sup>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역외 소득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그 상대적 영향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대도시의 경우 순유출되는 영업 잉여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인근 도 지역에서 피용자 보수가 순유입되어 이를 상계하기 때문에 전체 순수취요소소득은 유입을 기록하나,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영업 잉여의 순유출

14) 허문구 외(2015)의 분석방법과 이 글의 분석방법 및 결론이 어떻게 다른 가하는 점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표 8> 권역별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 비중

(단위: 10억 원, %)

| 구분  |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금액) |         |         | 요소별 비중(%) |       |
|-----|-----------------|---------|---------|-----------|-------|
|     | 합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
| 수도권 | 92,737          | 35,798  | 56,939  | 38.6      | 61.4  |
| 충청권 | -28,618         | -13,439 | -15,179 | 47.0      | 53.0  |
| 호남권 | -23,704         | -9,329  | -14,375 | 39.4      | 60.6  |
| 영남권 | -35,487         | -10,891 | -24,596 | 30.7      | 69.3  |
| 강원  | -4,823          | -2,841  | -1,982  | 58.9      | 41.1  |
| 제주  | -1,138          | -331    | -807    | 29.1      | 70.9  |

자료: <표 7>에서 계산

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사 입지나 유치의 중요성이 외지 통근자의 지역 내 정주보다 여전히 크다. 울산과 도 지역의 경우, 피용자 보수의 유출과 기업 영업 잉여의 유출이 다 일어나고 그 규모가 유사하므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과 본사유치 전략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용자 보수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용자 보수의 유출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묶어 보면 피용자 보수의 순수출입은 주로 인근 대도시와 도 지역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도 지역에서 피용자 보수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근 대도시에서의 통근 인구를 지역 내로 정주시키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이 형성된 이런 지역에서 과연 외지 통근자의 지역 정주 정책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 시책인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역외 소득 유출에 있어 지역 간 통근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피용자 보수의 유출입이 주로 권역내의 통근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별지역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 역외소득 순수출입 중에서 피용자 보수가 영업 잉여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권역별로 묶어 보면 피용자 보수보다는 영업 잉여 유출입의 중요도가 훨씬 크

게 나타난다. 역외소득 유출이 일어나는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경우 영업 잉여의 순유출이 전체 요소소득 유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3.0%, 60.6%, 69.3%로서 피용자 보수 순유출의 비중보다 높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이 큰 지역인 경우 주로 인근 대도시지역 간의 통근 때문에 유출이 발생하여 권역 전체로 피용자 보수의 유출과 유입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 2) 피용자 보수 및 영업 잉여의 유출지역과 방향

### (1) 피용자 보수

피용자 보수의 유출입은 근로자의 역외 통근행태를 반영하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별 통근행태를 가지고 그 유출입 방향과 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피용자 보수의 유출이 높은 지역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이나, 주로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외지 통근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남을 예로 들면, 총 통근인구의 순유입이 약 49,892명이나 이 중에서 광주와 전북 등 권역 내에서 유입되는 통근자가 47,70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권역 외에서 유입되는 통근자는 1,932명이고, 이 중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자는 988명에 불과하다. 한편 광주의 경우 외지로 통근하는 순통근자 49,892명 대부분이 전남, 전북 등 권역 내 통근자이다. 즉, 전남의 피용자 보수의 유출은 주로 광주로 이루어지고 수도권이나 권역 밖으로 유출되는 경로는 미미하다. 다른 외지에서 유입되는 통근자가 많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로 권역 내 대도시에서의 외지 통근자가 대부분이다.

다만 수도권 인근의 충남, 충북, 강원의 경우 권역 내 대도시 못지않게 수도권에서 통근하는 통근자도 적지 않아 수도권으로의 피용자 보수 유출이 크므로, 수도권에서 통근하는 통근자를 어떻게 지역 내로 정착시킬 것인가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표 9 > 권역별 통근자의 순유출입 지역(2010년)

(단위: 명)

| 구분  |    | 지역 내<br>통근자 | 권역 내<br>net out | 권역 외<br>net out | 총<br>net out | net out<br>to 수도권 |
|-----|----|-------------|-----------------|-----------------|--------------|-------------------|
| 수도권 | 합  | 8,596,329   | -               | 42,322          | 42,322       | -                 |
|     | 서울 | 3,928,761   | -715,104        | 12,708          | -702,396     |                   |
|     | 인천 | 909,237     | 80,889          | 6,962           | 87,851       |                   |
|     | 경기 | 3,758,331   | 634,215         | 22,652          | 656,867      |                   |
| 충청권 | 합  | 2,113,202   | -               | -32,621         | -32,621      | -30,805           |
|     | 대전 | 550,518     | 30,835          | 2,417           | 33,252       | 7                 |
|     | 충북 | 641,035     | -4,797          | -11,107         | -15,904      | -10,946           |
|     | 충남 | 921,649     | -26,038         | -23,931         | -49,969      | -19,866           |
| 호남권 | 합  | 2,096,098   | -               | -2,928          | -2,928       | -4,136            |
|     | 광주 | 532,355     | 49,139          | 753             | 49,892       | -186              |
|     | 전북 | 755,918     | -1,430          | -1,749          | -3,179       | -2,962            |
|     | 전남 | 807,825     | -47,709         | -1,932          | -49,641      | -988              |
| 대경권 | 합  | 2,047,920   | -               | -7,120          | -7,120       | -1,737            |
|     | 대구 | 878,618     | 70,187          | 9,441           | 79,628       | 1,470             |
|     | 경북 | 1,169,302   | -70,187         | -16,561         | -86,748      | -3,207            |
| 동남권 | 합  | 3,068,915   | -               | 5,430           | 5,430        | -1,379            |
|     | 부산 | 1,274,494   | 64,174          | 4,242           | 68,416       | -64               |
|     | 울산 | 452,576     | -26,254         | 6,782           | -19,472      | -275              |
|     | 경남 | 1,341,845   | -37,920         | -5,594          | -43,514      | -1,040            |

주: net out이 마이너스는 순통근자의 유입을 의미(피용자 보수의 유출)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DB에서 계산

(2) 영업 잉여

지역 간 영업 잉여의 유출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와 같이 영업 잉여의 지역 간 유출입 행렬표를 실측 통계로 작성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통계는 만들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 란에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지역 간 거래 행렬표를 작성하기는 하나, 피용자 보수만 거주지와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영업 잉여는 거주지 기준과 소재지 기준

<표 10> 영업 잉여 순유출의 지역별 크기와 방향(201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    | 순유출입액       | 순유출입 지역(금액) |            |            | 순유출입지역(비중) |     |            |
|----|-------------|-------------|------------|------------|------------|-----|------------|
|    |             | 서울          | 경기         | 권역 내 또는 기타 | 서울         | 경기  | 권역 내 또는 기타 |
| 부산 | -1,490,715  | -2,708,331  | -239,985   | 1,457,602  | 182%       | 16% | -98%       |
| 대구 | -646,513    | -1,627,579  | -140,382   | 1,121,448  | 252%       | 22% | -173%      |
| 인천 | -2,290,037  | -3,058,912  | -237,800   | 1,006,675  | 134%       | 10% | -44%       |
| 광주 | -1,254,306  | -1,889,669  | -173,449   | 808,813    | 151%       | 14% | -64%       |
| 대전 | 349,194     | -1,777,464  | 137,318    | 1,989,339  | -509%      | 39% | 570%       |
| 울산 | -9,445,075  | -8,127,005  | -791,626   | -526,443   | 86%        | 8%  | 6%         |
| 경기 | -6,655,875  | -13,214,045 | 0          | 6,558,170  | 199%       | 0%  | -99%       |
| 강원 | -1,581,800  | -1,306,535  | -220,267   | -54,998    | 83%        | 14% | 3%         |
| 충북 | -3,957,426  | -3,026,190  | -709,427   | -221,808   | 76%        | 18% | 6%         |
| 충남 | -8,813,959  | -6,398,980  | -1,586,828 | -828,151   | 73%        | 18% | 9%         |
| 전북 | -3,409,957  | -2,806,968  | -369,043   | -233,946   | 82%        | 11% | 7%         |
| 전남 | -9,324,487  | -6,397,146  | -776,182   | -2,151,159 | 69%        | 8%  | 23%        |
| 경북 | -11,590,543 | -8,841,798  | -1,145,787 | -1,602,959 | 76%        | 10% | 14%        |
| 경남 | -6,400,327  | -5,425,268  | -243,731   | -731,328   | 85%        | 4%  | 11%        |
| 제주 | -734,469    | -640,404    | -60,982    | -33,083    | 87%        | 8%  | 5%         |

주: -는 순유출, +는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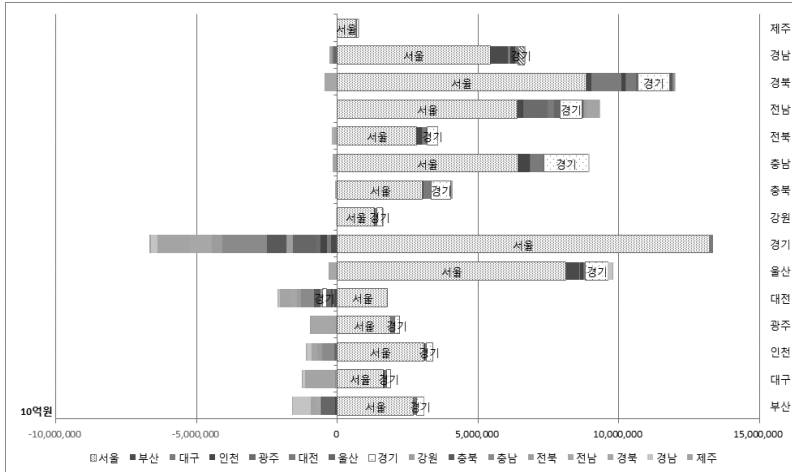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및 총사업체조사(2010) 원자료에서 작성.

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역시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 간 영업 잉여의 유출입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없다(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調査統計部, 2010).

따라서 여기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공장·지사의 본사 소재지 행렬 표를 구하여 지역별 영업 잉여의 유출 크기와 방향을 추정해 보기로 하자. 이 방법은 지역 소득통계의 영업 잉여 유출입 추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영업 잉여 순유출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표 10>과 <그림 7>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 잉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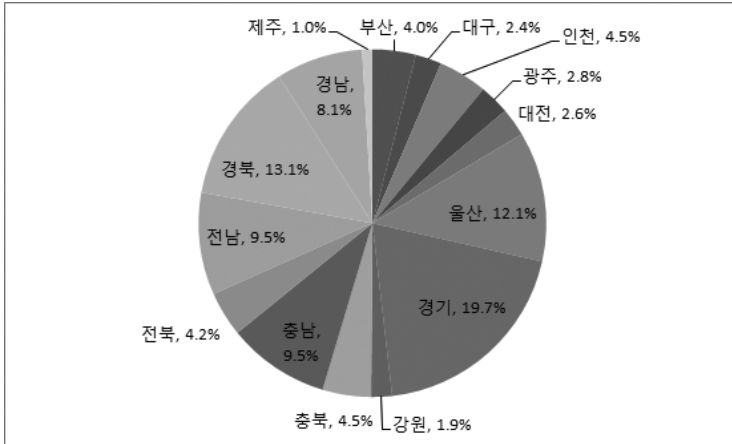
<그림 7> 지역별 영업 잉여의 유출입 크기와 방향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및 총사업체조사(2010) 원자료에서 작성.

순유출되는 지역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이 경기이며,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울산을 예로 들면, 총 영업 잉여 유출의 약 86%가 서울로 유출되고, 경기 지역으로도 약 8%가 유출되며, 인근 부산이나 기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크기는 약 5% 수준이다. 경북의 경우 약 76%가 서울로, 약 10%가 경기로 유출되며 나머지 14%가 기타 지역으로 유출되는데, 이 중에서 대구로 유출되는 비중은 약 9%에 불과하다. 특히 영업 잉여의 역외 유입이 없이 순유출만 있는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역의 경우 영업 잉여 순유출의 약 69~87%가 서울로 유출된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대도시의 경우 인근 도 지역으로부터 영업 잉여의 순유입이 일어나나 그 이상으로 수도권으로 영업 잉여의 순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영업 잉여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지역별 영업 잉여의 유출은 직접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지방 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그림 8> 서울로 유입되는 순영업 잉여의 지역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및 총사업체조사(2010) 원자료에서 작성.

의 서울 본사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한편 2010년도 서울로 유입되는 순 영업 잉여는 총 67,246십억 원으로서, 경기에서 19.7%, 울산에서 12.1%, 경북에서 13.1%, 충남 및 전남에서 각각 9.5%, 경남에서 8.1%가 유입되고 있다(<그림 8> 참조).

#### 4.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 분배 소득 통계가 신뢰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외 소득 유출현황과 결정요인 및 유출 형태와 방향을 살펴보았다.

피용자 보수의 추계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통근자 순유출입과 지역 소득에서 추계한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비교한 결과, 지역 분배소득의 피용자 보수 추계가 일반적으로 통근자 유출

입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업 잉여 추계의 경우 전국총사업체조사 자료를 가지고 공장·지사의 종업원 수를 본사로 소재지로 재배분해서 계산한 지사종사자의 순유출입 방향과, 지역 소득 통계에서 추계한 지역별 영업 잉여 순유출입 방향도 거의 일치하므로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추계도 유의성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추가적인 검토과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유입통근자가 많은데 오히려 피용자 보수는 순유출입을 기록하고 있거나, 충남과 전남 같은 경우 생산(근무지) 피용자 보수의 약 67~68%가 외지로 유출되는 것, 또 경기, 대전, 경북지역 등과 같은 일부지역에서는 본사소재지로 공장·지사의 영업 잉여를 재배분하여 추정한 영업 잉여 순유출규모와 실제 지역 소득 통계의 영업 잉여 순유출 규모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 등, 향후 지역 소득 통계의 추계 방법론상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점도 있었다.

한편 이 지역 분배소득 통계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역외 소득의 결정요인과 유출방향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소득은 역외 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지 못했다. 둘째로, 역외 소득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그 상대적 영향의 정도는 각기 달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업 잉여의 유출입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 물론 울산과 지방 광역도 지역과 같이 피용자 보수의 유출과 기업 영업 잉여의 유출이 다 일어나고 그 규모가 유사하므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과 본사유치 전략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피용자 보수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은 주로 인근 대도시와 도 지역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이 형성된 이런 지역에서 과연 외지 통근자의 지역 정주 정책이 바람직하고 또 가능한 시책인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더구나 권역별로 묶어 보면 역외 소득 유출 중에 피용자 보수 보다는 영업 잉여의 유출입의 상대적인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

상의 결과는 허문구 외(2015)가 주장하듯이 역외 소득유출입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본사업 지보다는 통근자의 지역 내 정착을 더 도모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결론이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피용자 보수보다는 영업 잉여의 유출을 억제하는 대책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영업 잉여의 유출입 지역과 방향을 보면, 피용자 보수와 달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대도시의 경우 인근 도 지역으로부터 영업 잉여의 순유입이 일어나지만 그 이상으로 수도권으로 영업 잉여의 순유출이 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지역별 영업 잉여의 유출은 직접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지방 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서울 본사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sup>15)</sup>

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순환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달리 개방(openness)체제이기 때문에 순환과정이 지역 내에서 완결될 수 없고 외부와의 연계성 속에 지역경제가 성장, 순환한다. 그러나 ‘지역발전(local development)’이라고 할 때 발전은 반드시 특정 장소(영역성: territorial)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Lee(2011)가 ‘지역발전이란 동의 반복어’라고 말한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국내, 해외로 이·수출되더라도 그 교역의 성과는 소득으로서 지역에 귀착되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물질 조건과 삶이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지역발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주요 요인 중의

15)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본사와 실질적 본사의 입지가 다르고 서울의 실질적 본사 입지 비중은 형식적 본사 입지 비중보다 훨씬 높아서, 서울 본사의 실제 집중도는 통계 자료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예: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 영통구에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 강남에 있음. 포스코 본사는 포항에 있으나, 실제 본사 기능은 서울 강남에서 수행).



하나는 성장성과가 지역 내로 귀착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본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영업 잉여의 유출 때문이므로, 이를 어떻게 억제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수도권은 고급인력과 각종 지식집약 인프라, 행·재정상 편익, 금융기관과의 관련성, 해외진출의 용이성 등으로 본사 입지에 압도적인 우위에서 있다. 그간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종 세제감면조치 등 지방으로 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동향도 보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서울 소재 대기업 본사의 이전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30대 재벌의 탈출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강남 소재 대기업들이 서울의 강북이나 강서, 또는 인천이나 안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양재섭·김정원, 2007). 물론 지방으로 이동하는 예는 드물지만, 2000년대 이후 서울 탈출 추세가 일부 감지되기도 한다. 2009년 다음의 제주 이전이나 동양 시멘트 본사의 삼척이전(2011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본사 입지(2013년) 등과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이나 현장 밀착경영 등의 이유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그런 예이다.

정보, 인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 해외 접근성 면에서 서울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준다. 첫째, 기업유치에만 초점을 두는 외생적 성장전략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득과 자금이 지역 내로 순환, 귀착되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재투자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역성장의 선순환 모델이 새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사의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넷째, 본사 유치 못지않게 본사 기능, 즉 제품기획, 영업, 재무, 국제업무 등 고급관리 기능의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박경 외, 2013). 다섯째, 내 부시장과 토착기업 육성을 통해 자립적 본사기업의 확충도 필요하다. 다섯째, Lee(2011)가 주장하듯이 대안적 경제순환, 즉 사회적 공생과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나 지역통화(LETs)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자율적 순환경제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여섯째, 역외 통근자의 역내 거주 촉진을 위하여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적인 정주여건의 개선 혹은 허문구 외(2015)가 지적하는 것처럼 종합적인 역내 거주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일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추후 논의될 과제임과 동시에 이 글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원고접수일: 2016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18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3월 22일

---

16) 최근 일본에서 지역창생전략의 일환으로 동경 집중을 막기 위하여 본사 지방 이전 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

❖ Abstract

The main factors deciding the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in Korea and the reliability of GRNI estimates

Kyoung Park

The researches about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in Korea have studied since 2009 when Korean Statistics Bureau published the statistics of GRNI(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However, these researches have not shown what were the main factors to decide the offshore outflow of regional income and areal directions of the outflow of regional income. They have shown only the size of outflow of regional income in each region.

This study will examine what are the key factors of deciding the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by using the Korean Statistics Bureau's primary GRNI data. Also this study will show areal directions of the outflow of regional income, using commute data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survey 2010 and the operating surplus data of the total economic survey 2010.

On the other hand, other countries, for example such as United Kingdom, Japan that have published GRNI statistics, have not estimate the residence-based corporate operating surplus. However, Korean Statistics Bureau has published it. Therefore the reliability of Korean GRNI estimates is in the question. This study will examine that the reliability and rationality of estimating GRNI, especially the residence-based operating surplus of Korea will be guaranteed.

Keywords: regional income outflow, reliability of Korean GRNI estimates, regional income outflow, operating surplus, workplace base and resident base regional gross value added

## 참고문헌

- 구재운·이승준. 1999. 「지역별 소득 재검토」. 1999 Winter KIEA Conference v. II, 한국 국제경제학회, 1027~1042쪽.
- 김정완. 2003.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9(2), 53~73쪽,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일. 2010. 「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12(1), 한국응용 경제학회, 181~203쪽.
- 노근호·정초시·김성태. 1995.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동태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 논집》 43(2), 37~64쪽.
- 민경휘. 2005. 「지역 간 성장률 격차와 성장 요인의 분석(I)」. 《지역경제》 2005년 1호, 산업연구원, 74~86쪽.
- 박 경. 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8, 83~113쪽.
- 박 경·박창귀·이동헌·이민정. 2013.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활성화 방안: 선순환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 박성익·유용철. 2005.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와 IT산업의 집중」. 《한국경제연구》 15, 199~226쪽.
- 양재섭·김정원. 2007. 「서울 대도시권의 기업본사 입지동향과 이전동향 분석: 1990~2003」. 《서울도시연구》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1~63쪽.
- 유병철·박성익. 2004. 「지역 소득 수렴여부와 성장요인분석: 동태 이질적 패널모형의 활용」. 《국제경제연구》 10(2), 105~126쪽.
- 이진원. 1997. 「한국 지역경제 성장수렴화와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9(4), 1~15쪽.
- 정준호·김동수·변창욱. 2012. 「역외 소득의 유출입을 고려한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 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2-293.
- 최두열·안시은. 2014. 「한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렴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6(3), 재정정책학회, 149~184쪽.
- 충청남도. 2012.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사전조사(충팔보고서)」. 한국 산업관계연구원.
- 통계청. 2010. 「2008년 지역 소득통계」, 2010.7.
- \_\_\_\_\_. 2012a. 「인구주택총조사(2010년)」.
- \_\_\_\_\_. 2012b. 「경제총조사(2010년)」.
- \_\_\_\_\_. 2012c 「지역 소득 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11.

- \_\_\_\_\_. 2014. 『지역 소득 통계 2010년 기준개편 및 2008 SNA 이행결과』.  
한국은행 강원본부. 2007. 『강원지역의 자금역외유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3.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현황과 과제』.  
허문구·안기돈. 2008.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 소득격차 간 인과관계 분석』.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20(2), 한국지역개발학회, 139~158쪽.  
허문구·이상호·김낙현. 2015.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 소득격차 결정요인 분석: 경남지역의 생산소득과 분배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경남본부·산업연구원.
- 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調査統計部. 2010. 『2005年地域間産業連關表』.  
内閣府. 2010. 『縣民經濟計算』.  
\_\_\_\_\_. 2013. 『縣民經濟計算標準方式』. 内閣府經濟社會總合研究所 國民經濟計算部.  
EUROPEAN COMMISSION. 1996. *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 1995*. Luxemburg, EUROSTAT.  
EUROSTAT. 1995. *Regional Accounts Methods—Gross Value-added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Statistical Manual. Luxemburg.  
Kahoun Jaroslav. 2011.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versus product approach.” Centre for Economic Studies, Universi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Prague. 1-11.  
Lacey David. 2001. “UK regional Domestic Product, Methodological Guide.”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Lee, R. 2011. “Within and out with/material and political?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patialities of economic geographies.” Pike, A., Rodriguez-Pose, A., and Tomaney, J. (eds.).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pp. 333~343.  
Trevor Fenton & Bethan West. 2013.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Workplace- and Residence-based Regional Gross Value Added.”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onal Economic Statistics.  
UN. 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 United Nation.

<부록 1> 허문구 외(2015) 분석 결과와의 비교

허문구 외(2015)는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실제 순유출입 크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본사의 종업원 수 비중과 유입 통근·통학인구의 비중을 사용하여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순유출입 크기를 가지고 분석했으며, 위 논문과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비에 사용한 각종 지표 값은 <부표 1>과 같다.<sup>17)</sup>

<부표 1> 지역별 순수취요소소득의 요인 분석 관련 지표(2010년 기준)

| 구분 | 역내 본사<br>종업원 수/전국<br>본사 종사자 수<br>(%) ① | 본사 유출입<br>순종업원 수/역내<br>총 종사자 수<br>(%)② | 실 영업 잉여<br>순유출입/<br>생산영업<br>잉여(%)④ | 영업 잉여<br>순유출입/<br>피용자보수<br>순유출입(배수)⑤ | 순수취<br>요소소득/<br>생산요소소득<br>(%)⑥ |
|----|--|--|------------------------------------|--------------------------------------|--------------------------------|
| 서울 | 22.2                                   | 28.6                                   | 62.4                               | 6.6                                  | 26.5                           |
| 부산 | 9.7                                    | -8.2                                   | -19.3                              | -1.9                                 | 6.4                            |
| 대구 | 8.1                                    | -7.6                                   | -15.7                              | -3.5                                 | 12.1                           |
| 인천 | 11.3                                   | -7.4                                   | -16.8                              | -2.5                                 | 5.8                            |
| 광주 | 10.3                                   | -12.2                                  | -32.4                              | -1.3                                 | 3.4                            |
| 대전 | 12.3                                   | -2.8                                   | -5.0                               | -4.4                                 | 12.0                           |
| 울산 | 13.8                                   | -16.2                                  | -46.6                              | 0.3                                  | -29.0                          |
| 경기 | 10.1                                   | -8.2                                   | 9.1                                | 1.9                                  | 14.3                           |
| 강원 | 6.2                                    | -11.8                                  | -37.0                              | 0.9                                  | -20.1                          |
| 충북 | 9.6                                    | -12.1                                  | -46.5                              | 0.5                                  | -24.2                          |
| 충남 | 11.7                                   | -13.2                                  | -52.2                              | 1.2                                  | -43.4                          |
| 전북 | 7.3                                    | -11.3                                  | -46.4                              | 0.4                                  | -22.1                          |
| 전남 | 8.3                                    | -11.3                                  | -55.0                              | 1.0                                  | -44.6                          |
| 경북 | 9.7                                    | -13.5                                  | -9.9                               | 7.4                                  | -21.1                          |
| 경남 | 9.8                                    | -10.5                                  | -38.2                              | 0.6                                  | -24.1                          |
| 제주 | 7.2                                    | -9.1                                   | -24.7                              | 0.1                                  | -12.2                          |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 사업체총조사, 경제총조사(2010년) 원자료에서 추출하여 계산

17) 허문구 외(2015)는 2000년, 2005년, 2010년 3개년 자료를 패널분석에 활용했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 1개년도 자료만 가지고 제시한다. 2012년,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도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또 본사 입지에 따른 종업원 수 유출입 순계 자료를 2010년도 1개년도만 확보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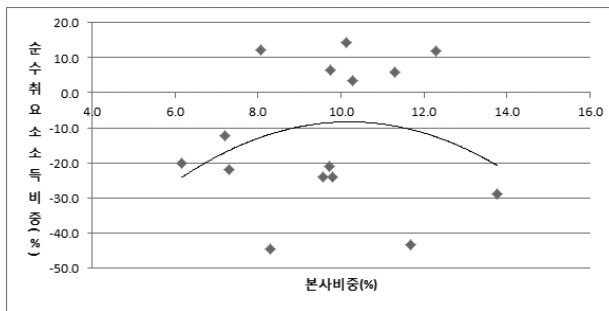
① 본사 비중(전국 본사 종사자 대비 역내 본사 종사자 비중)과 순수취본원소득 비중과의 관계

허문구 외(2015)는 본사의 종업원 수 비중과 기업의 영업 잉여 유출입 비중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 본사의 종업원 수 비중이 역외 순수취본원소득의 비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패널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양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본사 비중이 높을 수록 오히려 순수취본원소득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했다.

실제 <부도 1>에서 보듯이 역내 본사 종사자 비중과 생산요소소득 대비 순수취요소소득의 비중(여기서는 순수취본원소득 비중 대신 부표 1의 ⑥항의 순수취요소소득 비중을 사용)은 역 U자 관계였으며, 허문구 외(2015)의 분석처럼 본사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역외 순수취요소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음의 상관관계).<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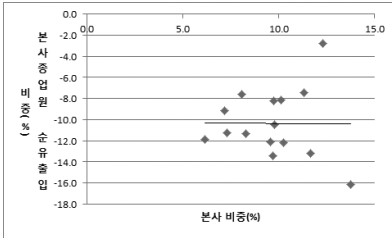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영업 잉여의 순유출입 비중은 허문구 외(2015)가 상정하는 것처럼 역내 본사 종사자 비중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역내 본사 종사자 비중이 역외 영업 잉여 순유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입지로 인한 전입 분공장 및 지소 등의 종업원

<부도 1> 본사 비중과 역외 소득(순수취요소소득) 유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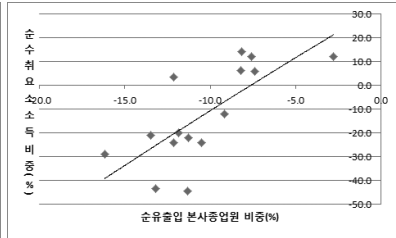


18) 허문구 외(2015)도 수도권권과 광역시는 제외한 것처럼, 여기서는 서울을 제외했다. 서울을 제외한 것은 본사 입지가 높고 역외 소득 유출 비중도 커서 결과에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도 2> 본사 비중과 순유출입  
본사종업원 비중



<부도 3> 순 유출입 본사 종업원  
비중과 역외소득유출비중



수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분공장 및 지소 등의 종업원 수의 순계 값이 영업 잉여 순유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영업 잉여 순유출 규모는 여기에 분공장 및 지소 등의 1인당 영업 잉여의 크기를 곱해줘야 한다. <부도 2>에서 보는 것처럼 본사입지 지역으로 전입, 전출 분공장 및 지소 등의 종업원 수를 순계한 것(<부표 1>의 ②항, 본사유출입 순종업원 수 비중)과 본사 비중을 비교한 것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대신에 순 유출입 본사종업원 수의 비중과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비율과 비교하면(<부도 3> 참조) 양지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허문구 외(2015)의 결론과 달리 순 유입 본사종업원 비중이 클수록, 즉, 순유입 영업 잉여 비중이 클수록 역외 순수취요소소득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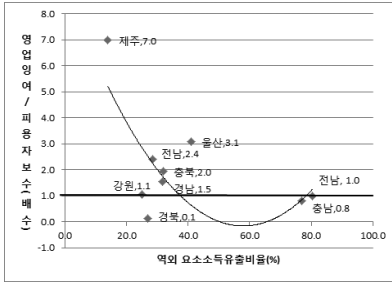
② 역외 소득 유출입 결정요인 중 영업 잉여와 피용자 보수의 상대적 중요도

허문구 외(2015)는 본사 비중 계수보다 통근·통학유입인구의 비중 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역외 소득 유출입 크기에 후자가 더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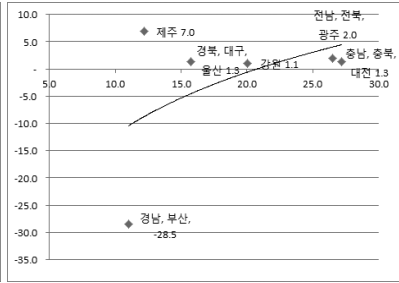
이를 보기 위하여 순수취요소소득 중 피용자 보수 대비 영업 잉여의 비중(<부표 1>의 ⑤)과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 비율의 관계를 본 것이 아래 <부도 4>인데(역외 순수취요소소득이 +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부도 4> 영업 잉여 및 피용자 보수의 상대적 크기와 역외소득유출 비율



<부도 5> 권역별 영업 잉여 및 피용자 보수의 상대적 크기와 역외소득유출비율



은 제외), 그림에서 영업 잉여의 상대적인 비중이 낮을수록(피용자 보수의 상대적 비중이 높을수록) 역외 소득 유출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허문구 외 (2015)의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 비율을 결정하는 데 피용자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상대적 중요성은 ‘한계(탄력성)’가 아니라 ‘평균’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순 유출되는 영업 잉여의 규모가 피용자 보수의 규모보다 크면(영업 잉여/피용자 보수의 배수가 1 이상)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 크기에 영업 잉여가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2010년의 경우 경북과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가 이에 해당).

단, 영업 잉여의 상대적인 비중과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의 비율이 역관계에 있다는 것은 영업 잉여의 유출이 줄더라도 피용자 보수의 유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역외 소득 유출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렇다고 피용자 보수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피용자 보수의 유출은 주로 같은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상계하면 권역 간에 역외 소득 유출에서는 여전히 영업 잉여의 유출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부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역으로 묶은 영업 잉여의 상대적인 비중과 역외 순수취요소소득 유출입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부록 2> 공장, 지사, 영업소의 본사 소재지별 종업원 수

(단위: 100명)

| 본사 소재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지사의 종업원 수 |
|----------|----------|---------|-------|-------|-------|-------|-------|---------|-------|-------|-------|-------|-------|-------|-------|------|-----------|
| 서울       | 5,249.4  | 98.2    | 29.8  | 65.3  | 54.3  | 106.9 | 28.9  | 581.8   | 25.9  | 52.9  | 91.1  | 27.3  | 12.3  | 54.2  | 62.9  | 10.6 | 6,551.9   |
| 부산       | 1,110.1  | 563.6   | 8.3   | 13.8  | 5.8   | 50.2  | 11.8  | 132.5   | 6.6   | 5.0   | 9.4   | 3.8   | 1.5   | 6.1   | 70.2  | 1.3  | 20.0      |
| 대구       | 640.1    | 20.0    | 342.7 | 4.3   | 5.8   | 30.7  | 1.0   | 77.7    | 0.6   | 2.5   | 4.6   | 2.2   | 1.1   | 38.9  | 5.4   | 0.3  | 11.8      |
| 인천       | 760.6    | 18.6    | 3.5   | 217.6 | 8.7   | 11.9  | 2.2   | 107.2   | 1.2   | 8.1   | 11.3  | 3.7   | 1.6   | 21.5  | 2.2   | 0.2  | 11.8      |
| 광주       | 610.9    | 11.4    | 2.6   | 9.3   | 163.1 | 36.4  | 0.7   | 63.2    | 0.3   | 4.3   | 4.7   | 9.0   | 37.9  | 1.3   | 1.6   | 0.0  | 9.6       |
| 대전       | 611.1    | 5.0     | 3.5   | 5.6   | 1.3   | 213.7 | 3.2   | 57.9    | 1.1   | 7.2   | 14.8  | 3.5   | 1.2   | 2.2   | 10.1  | 0.5  | 9.4       |
| 울산       | 672.2    | 40.7    | 3.4   | 9.6   | 1.1   | 6.4   | 143.6 | 68.6    | 0.5   | 1.0   | 8.3   | 0.8   | 0.4   | 14.7  | 16.0  | 0.4  | 9.9       |
| 경기       | 4,496.1  | 34.1    | 20.2  | 66.2  | 10.9  | 101.7 | 13.9  | 1,357.6 | 14.0  | 40.8  | 82.4  | 20.8  | 7.9   | 53.7  | 60.5  | 5.7  | 63.9      |
| 강원       | 489.9    | 4.2     | 1.2   | 4.9   | 3.3   | 23.3  | 1.1   | 95.2    | 142.7 | 4.3   | 5.9   | 0.8   | 0.7   | 2.2   | 2.2   | 0.6  | 7.8       |
| 충북       | 553.2    | 6.4     | 5.7   | 7.1   | 1.3   | 44.9  | 3.7   | 147.9   | 2.5   | 174.6 | 13.0  | 3.1   | 1.2   | 9.1   | 5.4   | 0.4  | 9.8       |
| 충남       | 807.5    | 5.0     | 3.1   | 56.6  | 3.5   | 62.9  | 13.0  | 226.4   | 1.4   | 7.7   | 213.8 | 3.4   | 4.0   | 19.1  | 11.9  | 0.3  | 14.4      |
| 전북       | 547.0    | 5.1     | 1.4   | 35.1  | 9.5   | 27.1  | 8.1   | 83.2    | 0.7   | 2.0   | 10.6  | 244.0 | 3.8   | 1.8   | 6.6   | 0.0  | 9.9       |
| 전남       | 485.6    | 10.5    | 1.0   | 4.6   | 74.1  | 19.4  | 16.4  | 60.6    | 0.8   | 1.9   | 4.8   | 9.8   | 167.0 | 36.9  | 3.2   | 0.1  | 9.0       |
| 경북       | 1,044.3  | 24.5    | 135.2 | 28.0  | 2.3   | 42.4  | 27.4  | 153.7   | 1.3   | 14.4  | 27.3  | 3.1   | 6.1   | 282.3 | 8.8   | 0.3  | 18.0      |
| 경남       | 1,117.0  | 164.4   | 18.2  | 37.5  | 3.2   | 21.1  | 10.0  | 88.1    | 1.8   | 5.7   | 8.6   | 13.1  | 2.6   | 7.4   | 358.8 | 0.2  | 18.6      |
| 제주       | 171.4    | 1.1     | 0.4   | 0.8   | 1.7   | 4.9   | 0.5   | 20.5    | 0.4   | 0.3   | 1.4   | 0.5   | 0.7   | 0.9   | 0.9   | 73.4 | 2.8       |
| 유입 종업원 수 | 19,366.2 | 1,012.7 | 580.2 | 566.3 | 349.8 | 803.9 | 285.4 | 3,322.0 | 201.9 | 333.1 | 512.0 | 348.8 | 250.1 | 552.5 | 626.7 | 94.4 | 6,778.5   |

주: 행은 본사 소재지 기준의 공장·지사·영업소의 종업원 수이고, 열은 공장·지사·영업소 기준의 종업원 수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행으로 보면 서울에 본사를 둔 공장·지사·영업소의 종업원 수는 5,249.4백 명이고, 부산에 본사를 둔 서울 소재 공장·지사·영업소의 종업원 수는 98.2백 명이다. 열은 거꾸로 서울에 본사를 둔 각 지역 공장·지사·영업소의 종업원 수를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조사(2010) 원자료에서 작성